

앞서가는 공제, 신뢰받는 공제 —————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

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 (화물공제 경기회관6층) TEL 031-242-3330, FAX 031-246-7947

업 무 1 과

과 장 : 유 재 만

문서번호 : 경기 제 425 호

시행일자 : 2022. 4. 5.

수 신 : 각 조합원사

참 조 : 공제(보험) 담당자

선결		지시	
접	일자 시간	결 재 · 공 람	
수	번호		
처 리 과			
담 당 자			

제 목 : 자부담금제도 변경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22년 제1회 지부자문위원회(22. 3. 15)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개선과 사고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(1)대인자부담제의 부활 과 (2)사고다발차량에 대한 자부담금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며,

3. 등 제도의 변경은 우리지부의 악화된 경영수지(2021년말 누적적자 596억원)개선 및 사고예방의 특단의 조치로서 많은 양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.

- 아 래 -

☐ 대인자부담금 부활(최초 사고시 30만원부과)

☐ 대인·대물자부담금 사고누적에 따른 차등부과(사고횟수별 금액 상이)

☐ 시행일자 : 2022년 7월 1일 신규 및 갱신계약차량의 사고분부터

- 이 면 계 속 -

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 (화물공제 경기회관6층) TEL 031-242-3330, FAX 031-246-7947

업 무 1 과

과 장 : 유 재 만

☐ 사고발생후 계약 갱신시 사고횟수 초기화

☐ 계약기간중 차량관리자 변경시 사고횟수 초기화 (단, 조합원이 “위수탁계약서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차량관리자 변경사항을 입증시에만 적용)

☐ 계약기간중 사고 횟수별 적용 자부담금

구 분	1회사고	2회사고	3회 부터
대 인	30만원	50만원	70만원
대 물	30만원	50만원	70만원

※ 상기제도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지부 업무과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 “끝”

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

경 기 지 부 장

